					시 민
문서번호	보건의료정책과-2709 	주무관	정신보건팀장	보건의료정책과장	보건정책관
결재일자	2013.1.23.			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		
방침번호		협 조			

台州以至大州至,台州十五大至

2013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설 운영자원 계획

2013. 1.

복 지 건 강 실

(보건의료정책과)

❤️서울특별시

➡ 사전 검토항목

:::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겉	Í 토 여 부 (■ 표시)	
	시 민	: 유□ (무■
시 민 참 여	• 이 해 당 사 자	: 유□ (무■
고 려 사 항	● 전 문 가	: 유□ (무■
	● 옴 브 즈 만	: 유□ ()	무■
	● 법 령 규 정	: 교통 □ 환경 □ 재해 □	
		기타 □ (정신보건법)	무 🗆
법령및기타	● 기 타 사 항	: 고용효과 □ 노동인지 □ 균형인지 □ 홍보 □	
고 려 사 항		취약계층 □ 성인지 □ 장애인 □ 디자인 □	
		갈등발생 가능성 □ 유지관리 비용 □	무□
	● 중 앙 부 처	: 유□ (무■
타자원의활용	● 민 간 단 체	: 유□ (무■
	• 기 업	: 유□ (무■
	● 관 계 기 관	: 유□ (무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민 간 단 체	: 유□ (무■
2 , 4 1	● 시 산 하 기 관	: 유□ (무■

2013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계획

2013년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고객에게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함

| 지원근거

- 정신보건법 제15조(사회복귀시설의 설치 · 운영)
- 정신보건법 제48조(단체 · 시설의 보호 · 육성 등)
- 정신보건법 제52조(보조금 등)
- 복지정책과-1075호('13.1.13) '1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

Ⅱ 사업개요

사 업 명 :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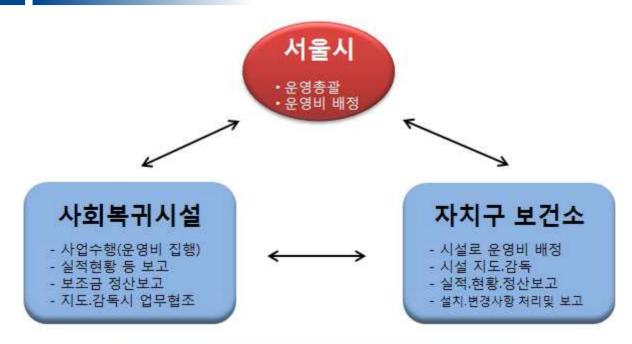
■ 사업기간 : 2013.01.01 ~ 2013.12.31

■ 시설현황 : 83개소 ('13년 신규지원시설 : 7개소 추가 예정)

(단위: 개소, 명)

7 4	711	이용	시설	주거시설	입소시설
구분	계	주간재활	직업재활	주거제공	중독자재활
시설수	83(7)	28	1	51(7)	3
이용자 수	1,702(49)	1,157	40	443(49)	55
종 사자 수	322(14)	192	6	107(14)	17

||| 추진체계



사회복귀시설 확대: 12년 85개소 → 13년 90개소 예정

• 신규시설(7개소): 주거제공시설 7개소

■ 폐쇄시설(2개소): 중화그룹홈, 동작애전(주거제공)

IV 세부운영지원

■ 종사자 인건비

● 기본급: 2013년 사회복지시설(생활시설)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(붙임1)

수 당 : 수당기준 (붙임2)

■ 운영비

지원금액

(기준: 입소(이용)인원 1인당 / 년)

구분	입소시설	주거시설	이용시설	비고
관리운영비	689,260원	689,260원	474,540원	'12년 대비 동결
프로그램운영비	185,760원	185,760원	185,760원	'12년 대비 동결

- 지원내역
 - ♦ 관리운영비
 - 건물유지비, 공공요금, 수용경비, 차량유지비, 난방비, 교육여비, 물품구입비 등
 - ◆ 프로그램운영비
 - 생활훈련, 작업훈련, 여기활동, 부서활동진행비 등 입소 및 이용고객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 비용

V 소요예산

예산총액: 14,783,375천원

■ 재원부담 : 시비 100%

🔲 지원방법 : 시에서 자치구로 분기별 재배정 후 자치구에서 시설로 배정

예산과목 : 보건의료분야서비스수준향상, 정신보건시설운영, 정신질환자

사회복귀시설운영보조, 사회복지보조

VI 행정사항

■ 정기 지도·감독

- 관할 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반기 1회이상 실시
- 진정·투서 등이 있을 경우 서울시에서 수시 특별점검 가능
-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(시정조치, 행정처분 등)하고, 동일 위반사항이재적발되거나 행정처분 미 이행시 처벌강화 및 불이익 조치

■ 시설 현황 보고

● 관할 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 운영 현황과 지도·감독 결과를 매 반기 다음달 (7월, 1월)7일까지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는 매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

붙임: 1. 2013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(생활시설) 기본급 지급기준 1부.

2. 수당 지급기준 1부. 끝.

붙임 1

2013년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표

(단위 : 천원)

직급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
직위 호봉	원장	사무 국장	과장 및 생활복지사	생 활 지도원	기능직	관리인	촉탁의사
1	1,258	1,046	990	906	792	891	2,278
2	1,295	1,081	1,023	933	821	919	_
3	1,332	1,115	1,057	961	850	947	_
4	1,368	1,151	1,091	989	879	974	-
5	1,405	1,186	1,124	1,017	906	1,002	-
6	1,441	1,221	1,159	1,044	934	1,030	_
7	1,479	1,257	1,193	1,072	963	1,057	_
8	1,515	1,291	1,227	1,100	992	1,085	-
9	1,553	1,327	1,260	1,128	1,021	1,112	-
10	1,589	1,361	1,294	1,156	1,050	1,140	_
11	1,626	1,397	1,327	1,183	1,078	1,167	_
12	1,662	1,431	1,360	1,209	1,108	1,195	-
13	1,700	1,466	1,395	1,237	1,137	1,223	_
14	1,736	1,503	1,428	1,265	1,166	1,250	_
15	1,774	1,537	1,462	1,293	1,195	1,278	_
16	1,810	1,573	1,496	1,321	1,224	1,306	_
17	1,847	1,607	1,531	1,348	1,253	1,333	-
18	1,883	1,642	1,564	1,376	1,281	1,361	_
19	1,920	1,678	1,599	1,404	1,310	1,388	-
20	1,956	1,713	1,632	1,432	1,339	1,416	_
21	1,994	1,750	1,665	1,460	1,368	1,444	_
22	2,030	1,784	1,699	1,485	1,397	1,471	_
23	2,067	1,819	1,733	1,513	1,425	1,499	_
24	2,103	1,854	1,767	1,541	1,453	1,526	_
25	2,140	1,889	1,800	1,569	1,482	1,554	_
26	2,178	1,924	1,834	1,597	1,511	1,582	_
27	2,215	1,959	1,869	1,624	1,540	1,609	-
28	2,251	1,993	1,902	1,652	1,569	1,637	_
29	2,288	2,030	1,937	1,681	1,599	1,665	_
30	2,324	2,065	1,970	1,709	1,627	1,692	_

2013년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

수당의 종류	지급대상	근무경력	지급액	지급회수 및 지급일			
(1) 상여수당							
가) 기말수당	전 종사자		봉급액의 200%	봉급액의 50%씩 연4회 (3,6,9,12월 보수 지급일)			
	전 종사자	1년미만	봉급액의 50%				
		2년미만	봉급액의 55%				
		3년미만	봉급액의 60%				
		4년미만	봉급액의 65%				
나) 정근수당		5년미만	봉급액의 70%	연 2회, 1,7월 보수 지급 일			
7 0 = 1 0		6년미만	봉급액의 75%	선 2억, 1,7별 모구 시합 글 (호봉을 근무연수로 인정하되, 미만으로인정)			
		7년미만	봉급액의 80%	예)5호봉-5년미만			
		8년미만	봉급액의 85%	" C			
		9년미만	봉급액의 90%				
		10년미만	봉급액의 95%				
		10년이상	봉급액의 100%				
	전 종사자	5~9년	정액 4만원	매월 보수 지급일			
다) 장기		10~14년	정액 5만원	(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			
근속수당	15~19년		정액 6만원	월정액 지급)			
		20년이상	정액 8만원	[18 년 시H)			
라) 가계안정 지원비	전 종사자		봉급액의 200%	봉급 액의 50%씩 연4회 (4,5,10,11월 보수 지급일)			
(2) 가계보전 및 -	복리후생비		I				
가) 가계보조수당	전 종	수사자	정액 5만원	매월 보수 지급일			
나) 교 통 ·급식비		· 사자	정액 11만원	매월 보수 지급일			
다) 명절휴가비			봉급액의 100%	봉급액의 50%씩 연2회,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(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)			
(3) 특수근무수 당							
가) 시설장수당	시	설장	정액 10만원				
나) 사무국장수당	사무	국장	정액 10만원				
다) 생 활복 지사수당	생활복지사		정액 9만원	매월 보수 지급일			
라) 생활지도원수당	생활기	시도원	정액 11만원				
마) 조리·위생수당	기능직		정액 9만원				
(4) 연장근로수당	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		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×1/209×1.5	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(주 40시간제)			
(5) 가 족수 당	전종사자		정액 2만원 (배우자 3만원)				
(C) H 7 A C	전 종사자 5년미만 5년이상		정액 24만원	매월 보수 지급일(서울시경력임)			
(6) 복지수당			정액 29만원				